

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

주소: 우 12461,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-181 3층/전화: 02-3271-0495/fax: 02-3271-0449 /담당자: 김현철

문서번호 : 세가본 제118호(전도-13)	선 결			지 시	
시행일자 : 천일국 7년 천력 2월17일 (양력 2019년 3월23일)	접 수	일자 시간		결 제 · 공 람	
경 유 :		번호			
수 신 : 전국 지구장 및 교구·교회장	처 리 과				
참 조 : 지구 총괄국장	담 당 자				

제 목 : 신종족메시아 혼독가정교회 운영 규정 수정

1.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삼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2.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를 통한 통반격과 및 지역복귀 더 나아가 국가복귀의 거점 마련을 위하여 혼독가정교회 승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. 이에 혼독가정교회를 활성화 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혼독가정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신종족메시아 가정에게 안내 하시어 적극적인 동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변경대상 규정안: 세가본 제296호(전도-40)공문 및 첨부된 신종족 메시아 혼독가정교회 규정안

나. 변경사항: 혼독가정교회 재적에 관한 사항(제6조 2항 및 제10조 1항)을 제6조 2항으로 변경 통합 함

변경 전		변경 후	
항목	내용	항목	내용
제6조 2항 재적 인원	제6조 【 혼독가정교회 승인 기준 】 2. 재적인원 직계 또는 믿음의 자녀와 종족으로 이루어진 혼독가정교회 정회원 식구 12가정을 확보하고, 매주 참여인원(성인 기준)이 3가정이상 되어야 한다.	제6조 2항 재적 구성	제6조 【 혼독가정교회 승인 기준 】 2. 재적구성 1) 혼독가정교회 설립시 재적은 직계 자녀, 믿음의 자녀(1대 및 2대) 그리고 친족(4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)중 본인이 원하는 자에 한해서 재적에 포함될 수 있으며 12가정이상 되어야 한다.

	정회원이란 소정의 원리수련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 혼독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.		2) 혼독가정교회 설립시 믿음의 자녀(1대 및 2대)의 경우 소정의 원리수련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자이다.
제10조 1항 설립시 재적 구성	제10조 【 식구관리 및 교육 】 1. 혼독가정교회로 운영하기 위한 설립 식구는 혼독가정교회장의 믿음의 자녀로만 구성 되어야 한다. 지역교회의 식구가 임의로 독립 혼독가정교회로 이관될 수 없다.		3) 혼독가정교회 설립시 직계 및 친족을 제외한 믿음의 자녀는 신한국가정연합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식구관리시스템(교회관리시스템)의 식구등급이 ‘새식구’ 또는 ‘휴면식구’일 경우 가능하다.(단, ‘정식구’의 경우 혼독가정교회 설립 또는 재인증시 소속 교회장, 교구장, 지구장의 승인을 득 할 경우 가능하다.) 4) 직계 및 친족의 경우 입회, 수련, 예배 요건충족과 관계없이 재적에 포함될 수 있다.(단, 교회관리시스템 친족구성에 포함되어야 함) 5) 매주 혼독가정교회 예배 참여인원(성인기준)이 3가정이상 되어야 한다.

첨부: 신중족메시아 혼독가정교회 운영규정(20190321개정)

“끝”

회 장 이 기 성

